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
2025. 6. 24(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9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,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개요
- 나. 세입·세출의 결산
- 다. 재무제표
- 라. 성과보고서
- 마. 결산서 첨부서류

IV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, 제150조(결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 승인)

○ 관련서류 : 2024회계연도 결산서(안) 및 결산검사 의견서

V. 검토내용

1. 보건소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가.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 (결산서 p)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1,650,422,000	11,773,465,530	11,745,183,030	99.76%
보건정책과	3,163,319,000	1,185,489,360	1,182,072,460	99.71%
건강증진과	4,195,564,000	6,440,993,130	6,440,993,130	100.00%
의약과	3,818,528,000	3,624,309,610	3,617,609,610	99.82%
위생과	473,011,000	522,673,430	504,507,830	96.52%

○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16억 5,042만 2천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117억 7,346만 5천원, 세입결산액은 117억 4,518만 3천원으로 징수율은 99.76%임.

나.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
					금액	비율(%)
계	22,648,242,750	20,455,852,070	0	1,479,610,490	712,780,190	3.15
보건정책과	8,250,357,250	7,106,313,330	0	841,476,160	302,567,760	3.67
건강증진과	7,491,337,000	6,881,425,710	0	370,121,640	239,789,650	3.20
의약과	6,136,049,500	5,738,024,570	0	256,448,500	141,576,430	2.31
위생과	770,499,000	730,088,460	0	11,564,190	28,846,350	3.74

-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26억 4,824만 2천원이며, 지출액은 204억 5,585만 2천원,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, 보조금반납금은 14억 7,961만원, 집행잔액은 7억 1,278만원임.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.15%입니다.

1) 다음연도 이월사업 <명시이월> → 없음 <사고이월> → 없음

2) 예산전용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 유
				감액	증액	
행 정 안 전 국			57,170,000	15,700,000	15,700,000	
보 정 책 과	자 체 예 방 접 종	201-01 사무관리비	11,450,000	5,000,000		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확보
	자 체 예 방 접 종	101-04 기간제근로자보수			5,000,000	
건 강 증 진 과	심 리 상 담 마 음 쉽 운 영	201-01 사무관리비	20,560,000	2,500,000		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	정 신 질 환 자 치 료 비 지 원	307-01 의료 및 회복비	14,160,000		2,500,000	국·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분 확보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 유
				감액	증액	
건강증진과	3040 세대를 위한 건강 프로젝트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8,200,000	8,200,000		키오스크 기기관리 효율성 저하로
	3040 세대를 위한 건강 프로젝트	201-01 사무관리비	2,800,000		8,200,000	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

○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3건 1,570만원임.

3) 예산이체 : 3개 부서 72건, 73억 8,646만 3천원임.

4) 집행잔액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 (A)	집행잔액 (B)	비율 (B/A)	사 유 별				
				보 조 금 정 산 잔 액	낙 차 찰 액	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미발생	지 잔	출 액
계	22,648,242,750	712,780,190	3.15	313,314,360	53,386,510	0	343,400,320	2,679,000
보건정책과	8,250,357,250	302,567,760	3.67	50,479,100	51,346,510	0	199,472,150	1,270,000
건강증진과	7,491,337,000	239,789,650	3.20	142,658,850	1,350,000	0	95,315,800	465,000
의 약 과	6,136,049,500	141,576,430	2.31	109,373,120	450,000	0	31,368,310	385,000
위 생 과	770,499,000	28,846,350	3.74	10,803,290	240,000	0	17,244,060	559,000

○ 2024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7억 1,278만원이며,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.15%임.

○ 집행잔액 사유는,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1,331만 4천원, 낙찰차액이 5,338만 6천원, 지출잔액이 3억 4,340만원, 예산절감액이 267만 9천원임.

다. 기금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부서명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
	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	867,373,790	-21,985,204	94,066,776	116,051,980	845,388,586
식품진흥기	위생과	867,373,790	-21,985,204	94,066,776	116,051,980	845,388,586

- 2024회계연도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액은 9,406만 6천원이며 사용액은 1억 1,605만 1천원으로 최종 2024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4,538만 8천원임.

라. 예비비 결산현황

- 801-01 일반예비비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	
합계				32,050,000	32,000,000	0	50,000	
의약과	보건의료서비스	비상진료병원약국	의료및회복지원	32,050,000	32,000,000		50,000	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추석연휴 경증환자 의료비 지원

- 2024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1건 3,200만원 사용.

2. 검토의견

-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3.15%로 전년대비 3.05% 감액됨.
-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,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,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,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,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49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4. 4. 16.] [대통령령 제34408호, 2024. 4. 16., 일부개정]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4. 4. 16.>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6. 9.>

1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2.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